美国의 軍需物資 原価計算基準

國防管理研究所 張 志 仁

머 리 말

國防調達은 일반적으로 需要者인 政府와 供給者인 民間業體사이에서 國防市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體系이다. 이 體系속에서 調達의 媒介體로 役割하는 것이 價格이며 이 價格은 雙方獨占과 유사한 國防市場 固有의 특성때문에 그 適正水準이 항상 問題視되고 있다.

이와같이 競爭의 不足이라는 市場의 특성때문에 일반적으로 國防市場에서의 價格은 일찍부터 발생한 原價에 의존해서 결정되어지는 方法이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때 原價算定의 基本原理가 原價計算基準이다.

이 基準은 各國別로 독립적인 會計環境 속에 發達해 오고 있는데 특히 美國의 경우는 基準의 제정기구로서 美議會의 代理機關으로 原價計算基準審議會(CASB)를 두고 여기서 基準을 研究·發展·普及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CASB의 設立 및 組織, 機能 그리고 CASB가 公表한 諸基準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다.

1. CASB 設置의 경위

CASB의 設置가 본격적으로 論議된 動機는 1968年 4月에 열린 1950年 國防生産法(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의 擴張에 관한 下院청문회에서 海軍中將 H.R. Rickover의 證言에서 보여진다.

Rickover는 國防契約者가 統一會計基準에 따라 政府契約의 가격를 계산하는 일 및 契約業者가 10만弗 이상의 계약을 政府와 체결하는 경우 그 原價와 利益에 관한 報告書를 제출할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의 內容은 1968年 議會에 제출되었고 議會의 청문회에서는 특히 會計檢査院(GAO)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會計基準에 모든 契約業者가 강제적으로 구속된 點에 强한 의구심이 表明되었고 그 法案은 완전한 承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會計檢査院長은 會計專門家 및 國防契約에 관계하는 産業部門의 代表者와 협의하고 統一的 原價計算基準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 結果를 議會에 報告해야 한다는 修正案이 승인되었다.

이 結果를 받아 會計檢査院長은 각종의 조사를 했으며 調査結果는 1970年 1月에 「協商에 의한 國防契約에 대한 統一原價計算基準의 適用可能性에 관한 報告書(Report on the Feasibility of Applying UCAS to Negotiated Defense Contract)」라는 제목으로 議會에 제출되었다.

이 報告書에 있어서는 1969年의 國防調達總額 408억달러중 協商調達總額이 89%이고, 또 政府調達總額 530억달러중 協商調達總額은 86.6%에 달하고 있으며, 協商契約業者의 原價見積이 價格決定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므로 그 原價의 測定에 있어서 準據될 統一的 原價計算基準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상세한 統一的 原價計算 節次를 규정하고 적용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調達契約의 協商 및 管理를 위해 原價計算의 統一性(Uniformity)과 繼續性(Consistency)을 높이도록 하는 原

價計算基準을 확립하고 적용하는 일은 可能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 報告書의 結果에 기초하여 美國議會에서는 1970年 3月末부터 4月初에 걸쳐 上院 청문회를 열고 國防契約에 대해서 統一原價計算基準을 設定하는 일에 관하여 다시 意見을 들었다.

이렇게하여 1970年 8月에는 國防契約에 대한 統一原價計算基準의 확립과 적용에 관한 法案이 議會에서 승인되었다.

이 法案은 國防生産法을 확장한 法案에 부가되어졌고 PL91-379로서 規定되어 있다. 이 法律에 의하여 1970年 8月에 의회의 一個 代理機關(An Agent of Conghess)으로서의 設立이 결정된 것이 CASB이다.

즉, CASB는 國防契約業者가 행하는 原價計算實務의 통일성과 계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原價計算基準 및 그 實行을 위한 規則과 규정을 작성하는 機關으로서 設立된 것이다.

2. CASB의 組織과 活動

가. CASB의 組織

政府機構內에 있어서의 CASB의 위치에 관해서는 行政府에 두는 意見도 있었지만 議會는 CASB를 準立法機關으로 두었으며, 1971年 1月에 正式으로 조직되어 活動을 개시했다.

CASB는 5人의 審議會委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L91-379의 規定에 의하여 會計檢査院長이 委員長이 된다. 委員長은 다른 4人의 委員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委員은 産業界, 政府機關, 學界 및 公共會計專門家로서 1名씩 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委員의 임기는 4年으로서 비상근(Part-time)이다.

1976年 6月 現在 CASB는 37人의 상근스텝(專門職스텝이 24人, 管理事務職스텝이 13人)을 갖고있다. 전문스텝의 멤버는 審議會멤버의 경력과 같이 政府機關, 産業界, 學界 및 公共會計專門家의 출신자로서 구성되어 있다.

24人중 9人은 政府機關, 7人은 産業界, 5人은 學界, 3人은 公共會計專門家의 출신이다. 개개인의 자격으로 보면 15人이 公認會計士이고 6人은 변호사이다. 또 스텝의 일은 大學敎授인 4人의 비상근 가문위원의 자문을 받고있다.

나. CASB의 活動

CASB의 주요한 活動은 말할것도 없이 原價計算基準을 작성하고 公表하는 일이지만 그외에 原價計算基準의 적용에 관한 規則을 결정하고 또한 基準의 적용에 관하여 政府諸機關에 대해서 적절한 助言·권고도 하고있다.

(1) 原價計算基準의 작성과 公表

1978年末 現在 CASB는 15個의 기준을 作成·公表하고 또한 약간의 主題에 관하여 기준을 作成하기 위한 硏究活動을 하고있다. 이들 基準의 作成·公表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過程이 일반적으로 利用되고 있다.

가) 테마의 선택

CASB는 문제의 性格과 重要性을 고려하여 일정의 계획에 의해 硏究테마를 선정하고 있으며 그때 利害關係者의 助言을 널리구하고 있다.

나) 槪念 및 現行實務의 檢討

硏究테마가 승인이 되면 CASB의 전문스텝은 그 문제에 관련한 회계개념과 現行의 실무를 再檢討하는 일로부터 연구를 開始한다. 스텝은 입수가능한 문헌을 음미하고 NAA, AICPA, FEI, AAA 같은 會計專門團體와 다른 組織의 代表者와 討議를 한다.

또 協商契約에 관한 原價의 취급방법을 檢討하기 위해 정부조달규칙과 契約控訴審議會(Board of Contracts Appeals)의 判例가 검토된다. 이러한 것을 위해 政府調達機關과 契約業者의 代表와 協議가 行해지는 일도 있다. 契約에 관한 現行의 實務는 實務者와의 인터뷰와 工場實査를 통하여 검토된다.

다) 代替案의 分析

나)의 調査에 기초하여 스텝은 문제점을 分析함과 동시에 그 問題에 대한 해결안을 찾아내기 위해 調査表등을 作成하고 利害關係者에게 배포한다.

라) 스텝初案의 作成

질문서의 結果등을 고려하여 스텝들은 原價計算基準의 初案을 作成하고 이것은 다시 會計專

門家團體, 契約業者, 政府機關등에 배부되어 널리 意見이 구해진다.

마) 聯邦公報에의 原價計算基準案의 公表

스텝初案과 그것에 대하여 주어진 意見에 기초하여 CASB는 原價計算基準案을 작성하고 CASB委員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경우에 그것을 聯邦公報에 公示한다. 이 原價計算基準에 대해서도 널리 意見이 求해지고 그에 대한 調査와 審議가 行해진후 原案은 경우에 따라 改正된다. 原案에의 意見과 그에 대한 CASB의 判斷 및 改正案은 다시 聯邦公報에 公示된다.

바) 議會에의 提出

CASB가 公表한 기준은 費用對 效益分析이 끝난후 聯邦公報에 있어서 최종 公示日에 議會에 제출된다. 만일 議會가 繼續會期의 60日 이내에 CASB가 제안한 基準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決議案을 可決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基準은 效力을 發生한다. 즉 그때에는 CASB가 公表한 基準은 法律로서의 效果를 갖게된다.

사) 公表한 基準에 대한 계속적인 檢討

CASB는 기준의 公表후도 公表한 기준을 檢討하기 위해 關聯政府機關으로부터 보고서의 提出을 要求하고 있다. 또 CASB는 산업계와 그외 다른 意見을 듣기위해 公表한 基準에 관한 評價會議를 개최하고 있다. 더우기 CASB는 그 公表한 基準에 있어서 CASB의 의도에 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解說書를 發表하고 있다.

또한 上記와 같이 CASB는 法律에 의해 基準을 公表할 특별한 責任을 가지고 있고 CASB의 기준은 AAA, AICPA,. FASB, NAA, FEI등이 發表한 기준, 혹은 原則과 달리 法的 拘束力을 갖고있다. 그러나 CASB가 관심을 갖는 會計問題의 많은 것은 그들 團體도 관심을 갖고있다.

따라서 上記에서 언급한 절차에서 명확한 것처럼 CASB는 그들 民間團體들과의 意見調整을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 또한 稅務會計上의 諸規定에도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다.

(2) 原價計算基準의 適用

上述과 같이 CASB의 基本的인 활동은 原價計算基準을 작성하고 公表하는 일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CASB는 그 적용에 관해서 助言, 勸告를 行하고 혹은 그 적용에 관한 약간의 決定을 行하고 있다.

우선 原價計算基準을 계약업자에 준수시키는 책임은 聯邦政府의 계약에 관한 諸機關에 있고 政府諸機關은 CASB가 規定하는 契約條項을 契約에 포함하는 일에 책임을 진다.

또 政府諸機關은 公示報告書를 받고 그 充分性을 檢査하고 거기에 나타난 原價計算方法이 계속하여 行해지고 나아가서 原價計算基準에 합치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檢査하고, 公表基準과 新基準에 일치하지 않을 時는 會計方法의 변경에 따른 價格調整을 하고 더우기 기준의 적용면제와 要件의 제외에 대한 契約業者의 신청서(Proposals)를 評價하는 일에 責任을 진다.

따라서 原價計算基準의 적용에 관한 기본적인 節次는 CASB가 하는것이 아니고 政府諸機關이 行하는 것이다. 그러나 適用上의 諸規定에 관해서 CASB가 決定을 行하고 助言을할 여지가 있다.

예를들면 새로운 基準에 의해 原價計算方法이 변경된 경우 調整規定은 CASB에 의해 作成되고 있다(Part 331~Part 331.50). 또 어떤 종류의 契約業者와 契約에 대해서 基準의 適用을 면제하거나 要件을 제외하는 일이 인정되고 있으며, CASB는 그 기준의 作成에 관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規定의 決定權限이 주어지고 있다.

또 CASB는 基準의 내용이 統一的으로 해석되게하는 責任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政府機關이 계약업자와 협상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관으로서의 代表者를 임명하고 基準과 規則의 해석에 統一性을 주는일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다.

더우기 CASB는 CASB의 기준과 諸規定이 관계자로부터 어떻게 받아드려지고 있는가를 항상 주의하는 責任을 가지며 이일에 관해서 CASB는 정기적으로 公表한 基準과 規則의 有效性을 評價하기 위한 會議를 열어 常時 意見과 質問을 받고 있다.

또 CASB의 기준과 規則에 중요한 異意가 생긴경우 이미 公表된 基準에 대한 해석을 公式的으로 명확히 하고 聯邦公報에 發表하고 있다.

3. 原價計算基準의 法的 拘束力과 公示報告書

가. 原價計算基準의 法的 拘束力

上述한 바와같이 CASB의 原價計算基準은 國防契約에 관한 契約價格計算을 위한 原價計算의 基準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이 法的 拘束力을 가지는 것은 實際의 契約에 있어 이를 遵守시키는 절차가 法的으로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以下에서 이에 대해 간단히 說明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節次는 특히 公示報告書制度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CASB가 보여주는 契約對象規定(Part 331, Contract Coverage)에 나타나 있으나 그에 의하면 政府와 10만弗 이상의 國防契約을 체결하는 契約業者는 누구나 契約의 一條件으로서 原則的으로 계약의 신청시에 그 실제에 行하고 있는 原價計算方法을 일정한 形式의 公示報告書를 통하여 政府機關에 報告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있다(Part 331—50).

또 原價計算方法이 하나 以上의 組織單位로서 全部 동일한 경우는 1통의 報告書를 제출하면 足하지만 그렇지않는 경우에는 각각의 公示報告書가 계약업자의 利益中心點(Profit Center), 事業部등의 조직단위에 대한 原價計算方法을 포함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原價가 複數의 本社部門에 배부된 경우에는 各 會社는 公示報告書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대해 약간의 경우 면제규정(Part 331-30, Applicability, Exemption & Waiver)이 있고 契約후에 公示報告書를 제출하는 일도 例外的으로 인정되지만 原則的으로는 上記의 契約業者는 契約申請의 價格決定, 契約履行原價資料의 集計 및 報告에 있어서 公示한 原價計算方法을 계속하여 사용함과 함께 그 原價計算方法은 CASB가 公表한 기준에 準據하는 일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은결과 政府가 支拂하는 原價가 증가한 경우에는 계약업자는 그 原價의 증가분에 利子를 붙여 返濟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Part 351~130h).

더우기 原價計算方法의 公示는 특정의 原價가 허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原價의 許容性은 調達規則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公示報告書는 계약의 監査와 契約價格의 協商에 이용되는 것이다. 즉 관계정부기관, CASB 및 會計檢査院은 契約業者가 公示한 原價計算方法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또 CASB가 公表한 基準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決定하는 것이다.

이렇게 CASB의 原價計算基準은 公示報告書를 통하여 明確히된 契約業者의 原價計算方法에 대하여 그 妥當性을 判定하는 規準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原價計算基準이 法的 拘束力을 발휘하는 實質的인 경우는 이러한 契約節次 가운데 보이는 것이다.

또 여기서 말하는 公示報告書는 政府機關등에의 原價計算方法의 報告를 보이는 것이고 企業의 原價計算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수단이 아니다.

公示報告書의 公的 利用可能性에 관해서는 CASB는 契約業者가 企業의 기밀정보로 간주하는 것을 條件으로 제출한 公示報告書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351~40d, Filing Requirement), 단 情報公開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기초하여 그 規則의 合法性에 관해 Ralph Nader 協會를 中心으로 異議가 신청될 경우도 있다.

콜롬비아 特別區 地方裁判所는 이 異議에 대해 CASB의 立場을 지지했으나 1974年 7月의 控訴院(U S. Court of Appeals)의 判決에서 파기되고 下級裁判所에 돌려졌으나 아직 결심이 되지 않고 있다.

끝으로 原價計算基準의 적용이 國防調達契約에 限定되는가 혹은 政府機關에 의한 非國防品의 調達契約에도 미치는가는 問題가 있으나 이것에 관해서 CASB는 CASB 관할외의 문제라고 明言하고 있으나 정부기관이 管理上 일관한 방침을 취하기 위해서는 非國防契約에 대해서도 CASB의 原價計算基準을 가능한 限 채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나의 例로서 總務局(GSA)은 그 聯邦調達에 CASB의 基準을 취하고 있다.

나. 公示報告書의 內容과 樣式

以上과 같이 公示報告書는 原價計算基準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그의 일정한 樣式은 CASB에 의해 고안되어져 있다(Part 351~140, Disclosure Statement). 그것은 8개의 Part로 되어있어 特定의 原價計算方法과 절차에 관한 60가지의 質問을 포함하고 있다.

報告書는 契約業者의 原價計算方法을 적절히 표사하기 위해 그 Form의 일정한 곳을 체크(Check)하거나 또는 코드(Code) 文字를 삽입하여 회답하면 좋도록 되어있는 部分이 많다. 단 質問에 따라서는 長文의 回答을 要하는 경우가 있다.

4. 原價計算基準

가. 原價計算基準의 目的

이 原價計算基準은 (1)準據되어야할 原則 내지 諸原則을 표명하고 (2)적용될 實務를 확립하고 契約原價를 見積·集計 및 報告하는 경우에 代替的인 원칙과 實務로부터 선택을 行하는 規準을 明確히 하기위해 CASB로부터 公式的으로 發表된 것이다.

그 目的은 (1)契約業者間의 原價計算方法의 통일성과 (2)各 契約業者의 原價計算方法의 계속성을 높이는 것이며 CASB는 이것에 관련하여 統一性, 繼續性, 許容可能性, 配分可能性, 公正性, 重要性 및 檢證可能性의 諸概念을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統一性(Uniformity)

統一性은 두개 以上의 會計實體에 관련하는 것으로서 類似한 상황에 있는 會計實體에 있어서 같은 結果가 생겨나도록 原價計算方法의 선택을 規制하는 規準을 設定한 것이다. 이것에 의해 동일한 狀況에서의 契約業者間의 比較可能性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다른 狀況에 있는 契約業者의 大部分이 동일한 統一會計시스템, 또는 同一의 計定科目을 사용하는 것이 의도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문제영역에 있어서 狀況이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될 경우에는 統一的인 原價計算方法의 設定이 가능하다.

(2) 繼續性(Consistency)

이 槪念은 같은 狀況의 바탕에선 期間이 달라도 契約의 결과가 比較可能하게 되는 原價計算方法의 사용을 규정하는 것이며 直接費 및 間接費의 區分, 原價對象에의 原價의 귀속등과 관련된다.

原價計算基準은 當事者 一方의 이익이 되도록 意圖的인 변경을 막게 設定되는 것이 필요하다. 同一企業體에서의 계속성은 原價의 見積과 實際와의 比較可能性을 높이고 또 狀況이 같은 경우에는 期間相互의 原價報告의 比較可能性을 높인다.

(3) 許容可能性과 配分可能性

CASB는 보상되는 原價範圍내지 原價項目은 결정하려고 하지않고 있다. 原價의 許容可能性은 契約價格에 영향을 주는 개념이며 規則 또는 契約上의 규정에서 확정된다.

政府契約 機關은 金額的으로 不合理하거나 公共政策에 反하는 듯한 原價를 契約價格에 算入하는 일을 배제하는 규정을 契約條件과 調達規則에 넣을 수가 있다.

한편 配分可能性은 契約原價의 확정과 관련하는 槪念이다.

契約原價는 原價와 原價對象間의 편익내지 因果關係를 반영하도록 原價對象에 배부되는 일이 바람직하다

原價計算基準은 원가의 定義와 測定方法, 특정의 原價計算에 原價를 배분하는 方法 및 原價를 原價對象과 계약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配賦하는 기준을 規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原價計算基準에 의해 許容原價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契約上 문제가 되는 原價와 配賦할 原價의 범위에 관한 定義를 주는 일은 原價計算基準의 목적이다.

(4) 公正性(Fairness)

契約價格決定의 결과는 當事者에 있어서 公正한 것이어야 함은 말할것도 없다. 어느 一方의 契約當事者라도 편기(Bias)가 없다고 생각될때 그 基準은 公正하다고 간주된다.

契約價格은 궁극적으로 어느 쪽이든 當事者에게 있어 不公正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나 契約의 協商, 管理 및 終決에 있어서 利用된 基準이 當事者에 대하여 사실을 나타내는 會計資料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基準自體는 契約의 결과에 불구하고 公正하다고 간주된다.

(5) 重要性(Materiality)

重要性은 契約 또는 다른 原價對象에 부담시킬 原價額을 결정하는 때에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基準의 管理가 合理的이 아니면 안되고 原價의 算定과 集計에 약간의 重要性 밖에 갖지않는 去來에는 重要性의 槪念을 고려하여 간편한 절차를 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會計上의 去來 또는 意思決定이 중요성의 槪念에 비추어 判定될 것인가 아닌가를 決定하기 위한 規準으로서는 (a)金額의 絶對的 크기 (b)原價項目과 原價對象과의 관계, (c)정부자금에의 영향, (d)계약가격과의 關係 (e)個個의 重要한 項目의 누적적인 效果가 거론되고 있다.

(6) 檢證可能性(Verifiability)

原價數値는 객관적으로 檢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契約原價計算시스템은 現實的으로 가능한 限 檢證可能한 原價資料를 제공해야 한다.

이 槪念의 목적은 契約原價는 原價를 뒷받침하는 資料와 書類의 검토, 또는 原價를 배부하기 위해 使用된 사실과 가정을 참조하는 일에 의해 監査가 可能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 原價計算基準

上記한 目的의 바탕에서 CASB는 1972年 7月以後 줄곧 일련의 原價計算基準을 作成하여 왔다. 1978年 末까지 公表된 基準은 다음과 같다. (괄호안의 年月은 各基準이 公表된 時期를 보이고 있으며 各 基準에는 Part 400에서 시작한 一連의 번호가 부쳐져 있다)

Part 400 定義(1972. 7)
Part 401 原價의 見積, 集計, 報告에 있어서 繼續性(1972. 7)
Part 402 同一目的을 위해 발생한 原價의 配賦에 있어서 繼續性(1972. 12)
Part 403 本社費의 部門別 配賦(1973. 7)
Part 404 有形資産의 資本化(1974. 7)
Part 405 非許容原價를 위한 會計(1974. 4)
Part 406 原價計算期間(1974. 7)
Part 407 直接材料 및 直接勞動을 위한 標準原價의 사용(1974. 10)
Part 408 有給缺勤을 위한 會計(1975. 7)
Part 409 有形固定資産의 減價償却(1975. 7)
Part 410 業務單位 一般管理費의 최종원가 대상에의 配賦(1976. 10)
Part 411 材料의 取得原價를 위한 會計(1976. 1)
Part 412 年金費의 構成과 測定(1976. 1)
Part 413 年金原價의 調整과 配分(1978. 3)
Part 414 設備資本費用의 一要素로서의 貨幣의 費用(1976. 10)
Part 415 移延補償原價를 위한 會計(1977. 7)

CASB의 활동은 現在 또한 계속중이며, 契約최종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直接材料費의 會計, 設計費등의 間接費의 配賦, 年金費의 조정과 配賦, 直接費와 間接費의 구분, 서비스센터 費用을 위한 會計, 保險費의 회계, 材料관련 費用의 配賦등의 諸問題가 그 硏究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다.

5. 原價計算基準의 영향

가. 公表基準의 有效性

上述한 바와같이 CASB는 公表基準의 유효성을 評價하고 또 基準의 적용을 도울 責任을 가지고 있다. 原價計算基準의 有效性 評價는 政府機關으로부터 제출된 年次報告書의 分析 및 基準의 履行狀況을 감독하는 일에 의해 行해지고 있다.

CASB는 1976年 8月에 1976年度 經過報告書(Progress Report to the Congress 1976, August 1976)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公表한 基準의 유효성, 基準의 適用免除 및 要件의 除外事項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이 報告書를 통하여 現在까지에서 보여진 CASB의 原價計算基準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이 經過報告書의 내용을 公表基準의 有效性에 관한 것만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政府機關 報告書

관련 聯邦政府機關은 CASB의 公表基準의 유효성에 관한 보고서를 曆年度 終了後 120日이내에 CASB에 提出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報告書는 公表된 基準의 유효성을 評價하고 새로운 基準의 작성과 改正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識別함에 利用되고 있다.

政府機關으로부터 보고된 公表基準에 관한 일반적 評價는 다음과 같이 報告되고 있다.

가) 契約提案書—契約의 제안이 繼續性, 統一性 및 信賴性의 面에서 개선되었다.

나) 原價의 見積—原價와 價格決定資料의 透視度가 높아졌다.

다) 契約의 協商—協商期間이 단축되고 協商이 改善되었다.

라) 契約의 管理—契約의 管理를 위한 時間과 努力은 증가했지만 效率的인 調達手段이라고 確信되었다.

마) 契約의 監査—國防契約監査局(DCAA)에 의하면 公表基準은 다음의 諸點에서 공헌하게 되었다.

(i) 많은 중요한 長期의 原價見積問題의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ii) 監査人, 契約業者 및 調達擔當官間의 論爭點을 좁힌다.

(iii) 契約業者의 會計方法이 임의로 변경되는 것을 감소시켰다.

(iv) 契約業者가 契約履行前에 論爭點을 해결하기 위하여 政府擔當官과 會計方法의 변경에 관해 協議하는 일이 가능하다.

(v) 契約提案書의 繼續性이 높아졌다.

(vi) 提案書의 評價에 있어 歷史的 記錄의 有用性을 높혔다.

(vii) 非許容原價의 識別과 제거가 용이해졌다.

(2) 公示報告書의 適切性

1976會計年度에는 契約業者가 제출한 139個의 公示報告書에 대한 檢討가 행해졌다. 여기서는 公示報告書가 정확한지, 一般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完全한지에 대한 檢討가 행해졌다. 또 352件의 檢討가 會計方法의 변경에 관해서도 행해진 일이 보고되고 있다. 83개의 公示報告書와 제안된 會計方法의 변경은 原價計算方法의 記述이 正確하지 않아 반송하였다.

(3) 公示한 방법의 準據不履行과 原價計算基準의 위반 契約業者는 公示한 방법에 準據하고 契約提案時의 價格決定과 계약의 履行原價 集計와 報告에 있어 原價計算基準에 따를것이 요구되고 있다.

만일 公示된 방법의 不履行에 의해 政府에 割增原價가 發生한 때에는 契約業者는 그 割增原價를 政府에 返濟하지 않으면 안된다. 1975年度에는 公示된 방법의 準據不履行數와 基準의 위반수가 648件 있었던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나. 他團體 및 産業界에의 영향

CASB의 設置는 다른 會計團體 및 産業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全國會計士會(NAA, National Account and Association)는 CASB에 관련해서 民間의 입장에서 原價計算基準을 연구하기 위해 管理會計實務委員會(Committee on Mgt. Accounting Practices, MAP)를 설치하고 原價計算基準에 관한 研究活動을 진행하고 있다. MAP는 1973年 3月에 「契約原價를 위한 諸槪念」이라는 意見書를 발표하고 CASB에 NAA의 見解를 표명했다.

MAP를 中心으로한 NAA의 原價計算基準의 연구는 당초 CASB에의 意見의 제시라는 목적을 갖고 시작되었으나 現在에는 國防問題라는 분리된 觀點에서 각종의 原價計算問題가 研究되고, 이미 數種의 意見書가 발표되고 있다.

또 MAP는 CASB에 意見을 표명하기 위한 小委員會(Subcommittee for Responses to the CASB)를 設置하고 CASB의 각종의 基準에 意見을 제출하여 CASB의 研究活動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있다. CASB는 현재 原價計算用語集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 작업은 MAP의 用語小委員會(Terminology Subcommittee)와 協商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 契約原價計算은 財務會計 및 稅務會計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CASB의 研究活動은 SEC, 內國稅入局(IRS, the Internal Revenue Service)등의 政府機關 뿐만아니라 FASB, AICPA, FEI등에 있어서 흥미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따

라서 CASB는 活動方針으로서 原價計算과 財務會計와의 사이에 意見의 相違를 피하기 위해 基準의 작성에 있어 다른 團體와 討議를 거듭하며 意見의 調整을 하고있다.

참 고 문 헌

1 神戶大管理會計研究會 "CASBの原價計算基準" 會計 제114권3호(昭和 53年 3月), 日本會計學會

2 Crowningshield, G R. & Gorman, K E, Cost Accounting; principle and Managerial Applications, Boston, Houghton Mufflin Company, 3rd ed., 1974.

3 Paul O Soderberg, "Procurement Contracting Officier's Guide to Cost Accounting Standards," Naval Postgraduate School, Sept. 1977

4. Cloyd Howell, "CASB; An Assessment" Management Accounting, April 1977

5 Harry O. Mayer, "Cost Accounting Standards" Management Accounting, Octorber 1975.

◇ 兵器短信 ◇

◇ TOW 用 夜視裝備 ◇

美陸軍은 視界가 불량하거나 夜間에도 對戰車미사일 TOW를 운용하기 위해서 現存의 裝備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照準裝置를 개발해 줄것을 요청했었다.

그러한 결과 Hughes社는 FACTS-FLIR이라고 命名된 照準裝置를 개발했는데 이는 Cobra TOW 헬機의 照準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이 裝置의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같이 이는 赤外線夜視裝備로서 TOW를 장비한 헬機에 裝着한다.

Texas州의 Fort Hood에서 가진 試驗發射에서 이 裝備는 완전한 性能을 발휘하여 암흑, 연막 또는 안개속에서도 標的을 볼수 있었다. Hughes社는 美陸軍과의 계약으로 FACTS를 設計, 생산하고 있다.

〈*Ground Defence No.* 63, 1980〉

◇ 소련의 對戰車能力强化 ◇

소련陸軍은 西方의 戰車開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NATO軍에 배치하게 될 LEOPARD 2와 新型 XM-1 戰車가 東區圈의 소련인 計劃立案者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이 틀림없다.

그리하여 戰鬪部隊에 새로운 T-100 Mod. 2, 125mm의 在來式 對戰車砲를 배치할 것이다. 이 新型對戰車砲는 自走式으로서 기능은 소련機甲部隊가 전진할 때 그들의 側面을 보호하는 것이 될것이다.

標準化하기 위해서 T-72의 武裝과 동일하며 彈藥輸送트럭은 戰車 및 T-100 Mod.2 對戰車自走砲에 같은 彈藥을 공급하게 된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自走砲가 壽命을 다할 경우 조만간 新型對戰車砲가 새로 배치될것 같다.

〈*Ground Defence No.* 63, 1980〉